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환경보건위원회 위원 구성에 시·도지사협의체 추천위원 반영 〉
■ 박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982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3
1. 환경보건위원회 위원 구성에 시·도지사협의체 추천위원 반영	3

I . 제안경위

【의안번호 제2214982호】

1. 발 의 자 : 박정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8.
3. 회부연월일 : 2025. 12.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커 환경보건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보건의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환경보건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아 에너지 수급에 대한 지역 의견 반영이 어려운 여건임.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제5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환경보건위원회 위원 구성에 시·도지사협의체 추천위원 반영

개정안은 환경보건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 제1호(시·도지사)에 따른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제3항제5호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 4. (생략) <u><신설></u>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u>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환경보건의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보건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환경보건 전문가·관련 시민단체 대표자·관련 산업계 종사자·관계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¹⁾).

그러나 현행법은 위원회 구성·운영에서 지방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심의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환경오염 취약지역 대상 건강영향조사 수행, 조사 이후 사후관리 이행현황 점검 등 환경보건 시책의 집행·환류 과정에서 지역 수요와 현장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 구성에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2)에 따른 시·도지사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

-
- 1) 「환경보건법」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환경보건 전문가
2.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3.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
4. 관계 공무원
④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지방자치법」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

록 하여, 환경보건 주요 사항의 심의 단계부터 지방 참여를 제도화하고 지역 의견 반영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환경보건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³⁾.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보건 시책 추진 과정에서 환경오염 취약지역 대상 건강영향조사 수행 및 사후관리 이행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점을 고려할 때, 환경보건 주요 사항의 심의 단계에서도 지역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 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42

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2. 시·도회의의 의장
3.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4.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

② (이하 생략)

3) 유사 입법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시·도지사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③ (이하 생략)